



광 양 시

시보는 읍면사무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시 보

제26호 2023. 6. 28.(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192호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1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2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3-205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7
광양시 고시 제2023-20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1474호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0
--------------------	------------------------	----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24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관개정조례	22
광양시 조례 제2025호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30
광양시 조례 제2026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36
광양시 조례 제2027호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3
광양시 조례 제2028호	광양시 한국어회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62
광양시 조례 제2029호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68
광양시 조례 제2030호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73
광양시 조례 제2031호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8
광양시 조례 제2032호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82

광양시 조례 제2033호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6
 광양시 조례 제2034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1
 광양시 조례 제2035호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99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12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4
 광양시 규칙 제91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관개정규칙 113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37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7
 광양시 규정 제438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1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동실 (☎797-2323, 행정2713)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광 양 시 장



1.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양제철소 설비확장공장부지 조성사업 2단계 7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김학동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변경없음)

- 조성된 토지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공장부지 및 원료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되,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

나. 개 요(변경없음)

- 부지조성(변경없음): 2단계 7차 509,998.6㎡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2단계 7차	비 고
계	509,998.6	
공장용지(㎡)	509,998.6	

○ 매립재(변경없음)

- 준설토사, 슬래그, 복합슬래그(FNS, 제강슬래그), 고품화벽돌, 폐연화, 재활용 골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및 경남 하동군 금남면 해면일부
 - 면 적(변경없음)
- 2단계 7차 509,998.6㎡(공장부지 509,998.6)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단계 7차 1996. 1. 1. ~ 2023. 6. 30.
- 변 경 : 2단계 7차 1996. 1. 1. ~ 2025. 6. 30. (증 24개월)
6.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공사비(변경없음)
- 2단계 7차 54,934백만원
 -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소요 자금은 당사((주)포스코)자체 자금으로 시행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조성된 토지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공장부지 및 원료야적장 부지로 사용
하되,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에 의거 매립지
소유권 취득
8.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대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0.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1. 승인 조건(별첨) - 게재생략
12.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고시는 생략하되 광양시청 산단과에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61-797-2932)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섬진강(국가하천)
점용자	주소	평양시 진월면 대리동백길 20
	성명	최상중
점용지역	위치	평양시 진월면 월길리 1731-2번지
	면적	2,000㎡
점용목적		식물의 식재
점용내용		야생화재배, 화훼단지조성
점용기간		2023. 7. 1. ~ 2024. 6. 31.

나. 관계도서는 평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2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용장길 194 (성황동) 외 7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6.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8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677	전라남도 광양시 용장길 194 (성황동)	20230628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8-18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백운2로 157	20230628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277-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해창길 8-33	2023062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산9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209	20230628	20090623	유당공원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689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8길 34	20230628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울천리 734-6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울천길 21-13	2023062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50-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무선길 51-9	2023062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8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36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항동길 67-4	20230628	20220831	행정리명에서 인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
	성명	광양시장(문화예술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칠성리 881-2번지 외 1필지
	면적	2,947.43㎡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리버마켓@심진강 개취
점용기간		2023. 7. 7. ~ 2023. 7. 9.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분할) 고시합니다.

〈분할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지번주소	건물번호 변경일	건물번호 분할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인덕로 1169-20 *일부 변경	인덕로 1169-20	봉강면 지곡리 862-36	2023. 6. 28.	건물군 분할
		인덕로 1169-18	봉강면 지곡리 864-29, 864-3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28.

광 양 시 장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32-6	2023. 5. 2.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28.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번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32-6	2023. 5. 2.	2023. 6. 28.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및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6. 28.

광 양 시 장



1. 모집인원 및 분야

가. 공 고 명: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나. 모집인원: 00명

다. 모집분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3.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응모자격

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2)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 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도시계획)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도시계획)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또는 도시정책) 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분야 이외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 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2)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분야의 관련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분야의 관련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신청자격의 제한

- 1)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총 6년 이상 위촉되거나 3회 이상 연임한 자
- 2) 광양시 관내 현업 종사자(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곳 이상 활동하는 경우 위촉 제한 가능(인력 구성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5. 선정기준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 다. 성별, 연령별, 분야별 등 다양한 인원을 선정
-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6.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사진부착) 1부 ※ [별첨1]
-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서 1부 ※ [별첨2]
-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3. 6. 29.(목) ~ 2023. 7. 5.(수)

※ 토·일·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방문 접수 불가(단, e-mail 제외)

나. 접수처: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

- 주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층 도시재생과(우57785)

- 다.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접수, e-mail(be1216@korea.kr)
-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mail(유선 확인 필수)

8. 선정결과 안내

- 가. 통지방법: 적격자 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유선)
- 나. 통보 예정일: 2023. 7. 14.(금)
- ※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 분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 다. 여성위원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라.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마.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 직장 근무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바. 우리 시에서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그 밖의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첨1]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응모분야	
------	--	------	-------------	------	--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학과명)			직위(급)			사 진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장	(우)							
	자 택	(우)							
연 락 처	직 장	tel	fax						
	자 택	tel	fax						
	핸드폰								
	E-mail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공(세부전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 제목 :							
자 격 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 가 · 관 리 기 관				
주 요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부서명 (학과)	직위(급)	주요업무			

나. 위원회 활동 경력 (최근 3년 이내 실적)

위촉기간	위촉기관	위원회명	주요활동	비고

※ 현재,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시·도, 시·군·구) 위원회 위원일 경우 반드시 기재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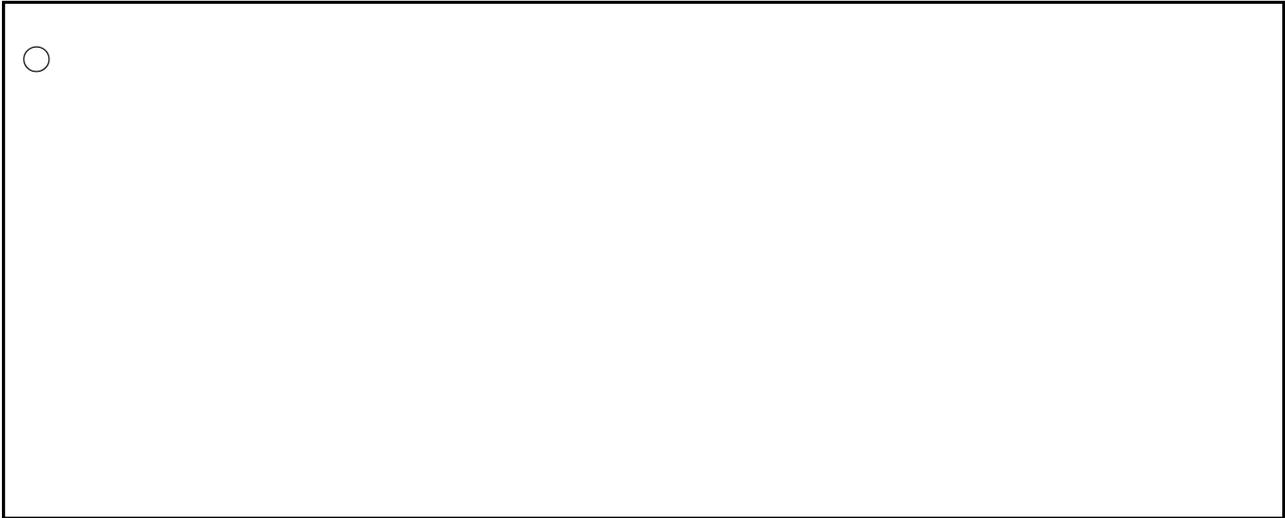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과제명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총수행 기간	연구년도	비고

라. 논문 및 저서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발표논문 또는 저서명	발표당시 소속기관	공동저자	발표지, 학회명 또는 출판사	발표년도

마. 기타 전문분야 활동 (최근 3년 이내 실적)



붙임 : 각종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추천서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이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응모가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모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6. .

지원자 성명 : (서명)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참고자료]

공개모집 지원서 작성 요령

1. 공개모집 응모자는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e-mail 제출 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서 작성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서 등의 세부 작성요령은 아래에 따릅니다.

가.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나. “응모분야”는 해당 모집분야 명을 반드시 기재

다. 지원서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라. “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마. 내부 심사를 통하여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므로 경력 사항, 참여프로젝트, 위원회 활동, 저서 및 논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사본 등

바. 우리 시 또는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활동 경력에 자세히 기재하고, 특히 현재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일 경우 누락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4호

붙임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2조(「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6호 단서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별표 7의 비고 4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

제3조(「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개정)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중목

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 중 “만13세”와 “만2세”를 각각 “13세”와 “2세”로 한다.

제11조(「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1세”와 “만18세”를 각각 “11세”와 “18세”로 한다.

제12조(「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라목 중 “만20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u>만 65세</u>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지원대상자) ----- ----- <u>65세</u> ----- ----- -----</p>

제2조(「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사용료감면) ② (생략) 1. ~ 15. (생략) 16.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마지막 자녀가 <u>만 18세</u> 미만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별표 7] (비고) 1. ~ 3. (생략) 4. 가임여성은 <u>만13세</u>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u>만13세~18세</u>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p>	<p>제25조(사용료감면) ②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 ----- ----- <u>18세</u> ----- ----- [별표 7] (비고) 1. ~ 3. (생략) 4. ----- <u>13세</u> ----- ----- ----- <u>13세</u> ----- -----</p>

제3조(「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5. (생략) 6. (생략)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 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만 <u>65세</u> 이상의 노인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다. ----- ----- ----- <u>65</u> <u>세</u> -----

제4조(「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자 등록·심사) ②(생략) 1. (생략)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략) 나. 만 <u>65세</u> 이상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 자 등록·심사)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u>65세</u> ----- ----- -----

제5조(「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고령운전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65세</u> ----- -----

제6조(「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 ----- ----- <u>65세</u> ----- ----- ----- -----

제7조(「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u>만65세</u>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u>65세</u> ----- ----- ----- -----

제8조(「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u>만 19세</u> 이상 지역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 ----- <u>19세</u> ----- ----- ----- ----- -----

제9조(「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고령운전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65세</u> ----- -----

제10조(「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물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기준 : 일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외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광양시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및 성인 (만13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만2세 ~ 12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관외인	광양시민	청소년 및 성인 (만13세 이상)	4,000원	2,000원	어린이 (만2세 ~ 12세)	2,000원	1,000원	<p>【별표 1】 물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기준 : 일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th> <th style="text-align: center;">-----</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13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2세 ~ 12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	-----	----- (13세 이상)	-----	-----	----- (2세 ~ 12세)	-----	-----
구 분	관외인	광양시민																	
청소년 및 성인 (만13세 이상)	4,000원	2,000원																	
어린이 (만2세 ~ 12세)	2,000원	1,000원																	
구 분	-----	-----																	
----- (13세 이상)	-----	-----																	
----- (2세 ~ 12세)	-----	-----																	

제11조(「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여성청소년”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u>만</u> <u>11세</u> 이상부터 <u>만18세</u> 이하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11세</u> ----- <u>18세</u> ----- -----

제12조(「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면) (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u>만20세</u>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10조(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19세</u> -----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5호

붙 임 :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① 총괄부서장은 국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의 공모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와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파악·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의 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파급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

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신청하기 전에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안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 보상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 보상금 등을 지급한 이후 제12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①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광

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시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로 국비가 회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2.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행정 착오와 과실로 공모·선정된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6호

붙 임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란 기업이 관외에서 주사무소, 영업소,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13.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략산업”이란 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외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8.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0.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
21.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2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2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2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

한다.

2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
· 외 투자유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
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 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임원 및 퇴직 공무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 발굴, 투자유치 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과 출장비 등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2와 같다.

제11조(입지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및 계약금의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지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정보기술업종 기업은 관내 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당 6개월간 월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14조(지원한도 및 이중지원 금지) 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한 경우
2.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

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별표2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입지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 시장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금융 및 현금지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컨설팅 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23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임대감면율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그 밖의 지원

제25조(지식정보문화보조금) 시장은 관내에서 별표 1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내 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26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국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고

- 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고 100억 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 최고 500억 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최고 1,000억 원까지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규모,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28조(기반시설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내 투자기업 부지 및 그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9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시장은 투자기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양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6장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부지, 시설 등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 ⑤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 ⑥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

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민간인 또는 관련기업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민간인 또는 관련 기업을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을 활용 할 경우에는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필요한 경비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시장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발달
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7호

붙임 :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주적인 사회참여 속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고용, 평생교육·직업훈련, 문화·체육·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개발

다. 교육·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기관과 필요한 긴밀한 협력

나.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다.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평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임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

8.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법 제16조(현장조사) 및 제17조(보호조치) 등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 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8호

붙 임 :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광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 등”이란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한 전라남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사용환경 개선
4. 한국수어의 교육·보급·홍보
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한국수어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 활성화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어통역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 등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등의 설계심사를 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 제공)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 및 인식 개선
2. 수어통역 지원
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에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방송물로 제작하여 송출할 때는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기념행사)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광양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와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9호

붙 임 :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육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독려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와 인센티브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제공
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행사의 홍보물 제작
4. 걷기앱 가입자 또는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관리 등)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0호

붙 임 :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 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림어업인의 책무) 청년농림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림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림어업인의 영농·영림·영어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림어업인의 농·어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림어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3. 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영림·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5. 선도농가·임가·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6.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지원
 - 7. 창업 및 경영 컨설팅
 - 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림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양봉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1호

붙임 :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의 보호·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에 등록 된 양봉농가
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밀원식물의 확충)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정·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①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서양벌과 토종벌 등 동종 또는 다른 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봉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지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2호

붙 임 :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스마트팜 시설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직영하거나 필요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

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3호

붙 임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
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광양시과학영농관 1층)에 둔다.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한다.

제7조(교육) 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

집에 공고한다.

제8조(공급규격) 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무상공급) 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유상공급) 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농업
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4호

붙임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

양시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분석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

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2. 가축분뇨 퇴·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
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분석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

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양·농업용수 분석의뢰서			
성 명 (작목반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료구분	토양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인증 (무/유)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우수관리(GAP) <input type="checkbox"/> 농가의뢰(일반)	농업용수 <input type="checkbox"/> pH(산도) <input type="checkbox"/> EC(전기전도도) <input type="checkbox"/> 염분농도(%)	
시료 접수	총 (점)		
발급통보 유 형 (선택)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인증기관 발송 :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메일 : <input type="checkbox"/> 상담소 : <input type="checkbox"/> 방문 : <input type="checkbox"/> 문자 :		
<p>『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분석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 니다.</p>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신청인	성명 (법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소재지)		의뢰일자	
분석결과	시료명			
	분석방법			
	분석항목	기준치	분석결과	
사용목적				
기타				
<p>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10px;">광 양 시 장</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발급일자 : 20 담당자 : 전화 : </p>				

광양시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22.)에서 의결된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5호

붙 임 :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광양시과학영농관 3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시료관리)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

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 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12호

**붙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제8조제1항 중 “3일”을 “4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액급여

(단위: 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반 주 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914,000
	단 무 장	1,724,000
	반 주 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1,919,000
	악 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별표 3]

공연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시립합창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반 주 자	300,000	170,000
	악보기획담당	300,000	170,000
	단 원	200,000	15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반 주 자	300,000	170,000
	성악지도담당	300,000	170,000
	단 원	50,000	30,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악 장	300,000	170,000
	연희악장	300,000	170,000
	악기기획담당	300,000	170,000
	단 원	200,000	150,000

[별표 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수당	비고
100,000원 × 2회(상·하반기)	※ 일반단원에 한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8조(근무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u>3일</u>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월액급여</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직 책</th> <th style="width: 60%;">월액급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87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주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보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091,0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시립소년소녀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15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주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악지도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293,000</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립국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87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희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기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43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091,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2,878,000	단무장	1,439,000	반주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158,000	단무장	1,293,000	반주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2,878,000	단무장	1,439,000	악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원	1,091,000	<p>제5조(실비보상)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무시간) ① ----- ----- <u>4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u>월액급여</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직 책</th> <th style="width: 60%;">월액급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시립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3,83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주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보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455,000</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시립소년소녀합창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2,91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주자</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악지도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724,000</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시립국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휘자</td> <td style="text-align: right;">3,838,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무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희악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악기기획담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919,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455,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2,878,000																																																																							
	단무장	1,439,000																																																																							
	반주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158,000																																																																							
	단무장	1,293,000																																																																							
	반주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2,878,000																																																																							
	단무장	1,439,000																																																																							
	악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원	1,091,000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별표3]

공연수당

(단위 : 원)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시립 합창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단 무 장	300,000	150,000
	반 주 자	250,000	120,000
	악보기획담당	250,000	120,000
	단 원	150,000	100,000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단 무 장	300,000	150,000
	반 주 자	250,000	120,000
	성악지도담당	250,000	120,000
	단 원	30,000	10,000
시립 국악단	지 휘 자	500,000	250,000
	단 무 장	300,000	150,000
	악 장	250,000	120,000
	연희악장	250,000	120,000
	악기확담담당	250,000	120,000
	단 원	150,000	100,000

[별표 3]

공연수당

(단위 : 원)

구 분	직 책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시립 합창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반 주 자	300,000	170,000
	악보기획담당	300,000	170,000
	단 원	200,000	150,000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반 주 자	300,000	170,000
	성악지도담당	300,000	170,000
	단 원	50,000	30,000
시립 국악단	지 휘 자	550,000	300,000
	단 무 장	350,000	200,000
	악 장	300,000	170,000
	연희악장	300,000	170,000
	악기확담담당	300,000	170,000
	단 원	200,000	150,000

[별표 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2일)	※ 월액급여 및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신 설>

[별표 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수당	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별표 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수당	비고
100,000원 × 2회 (상·하반기)	※ 일반단원에 한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13호

붙임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
개정규칙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어린이 수탁 신청서 중 “만 세”를 “세”로 한다.

제2조(「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와 같은항 제2호 중 “만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업) (생략)</p> <p>1. (생략)</p> <p>2. 보육사업 : 수강생자녀(만 3세 이상 취학전 아동)</p> <p>[별지 제3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접수번호</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수탁 신청서</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어린이</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30%;">(만 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수강자</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관계</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수강과목</td> <td colspan="2"></td> <td>수탁시간</td> <td>시분~시분 (,요일)</td> </tr> <tr> <td>수탁기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td> </tr> <tr> <td>첨부서류</td> <td colspan="4">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td> </tr> <tr> <td colspan="5">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또는서명)</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광 양 시 장 귀하</td> </tr> </table>	접수번호	어린이 수탁 신청서				어린이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주소				수강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화번호		수강과목			수탁시간	시분~시분 (,요일)	수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첨부서류	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p>제3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보육사업 : -----(3세 -----)</p> <p>[별지 제3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30%;">(세)</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	---		-----	(세)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어린이 수탁 신청서																																																																																																												
어린이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주소																																																																																																												
수강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화번호																																																																																																										
수강과목			수탁시간	시분~시분 (,요일)																																																																																																									
수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첨부서류	없음 (필요시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위 어린이를 귀 센터 유아실에 수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	-----																																																																																																												
-----	---		-----	(세)																																																																																																									

-----	---		-----																																																																																																										
-----	---		-----																																																																																																										
-----	-----																																																																																																												
-----	-----																																																																																																												
-----	-----																																																																																																												
-----	-----																																																																																																												
-----	-----																																																																																																												

제2조(「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회원가입) ① (생략)</p> <p>1. 만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p>	<p>제6조(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p> <p>1. 14세-----</p>

<p>(최근 3개월 이내 유효)</p> <p>2. <u>만14세</u> 미만의 신청자 : 보호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p>-----</p> <p>2. <u>14세</u> -----</p> <p>-----</p> <p>-----</p>
--	---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7호

붙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2년 미만 : 3일
2. 재직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 : 4일
3. 재직기간 4년 이상 6년 미만 : 5일
4. 재직기간 6년 이상 : 6일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광양시 여비조례</u>」 제2조제3항에 의한 광양시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 제2조 제3항----- ----- ----- -----.</p>
<p>제2조(지급대상)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p> <p>1. 2. (생 략)</p> <p>3. <u>운전원</u></p>	<p>제2조(지급대상)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4조(준용규정) 여비지급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광양시 여비조례</u>를 준용한다.</p>	<p>제4조(준용규정) ----- ----- ----- 「<u>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p>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8호

붙 임 :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관련부서(실과소)장”을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정상적인 때는 주민감시요원의 수·임기 및 수당을 <u>조례 제10조</u>의 규정에 의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근무 상한연령)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u>의거</u> 근무상한연령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p> <p>제17조(위임)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u>관련부서(실과소)장</u>에게 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등을 위임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조례 제11조</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근무 상한연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라</u> ----- ----- ----- -----.</p> <p>제17조(위임) ----- ----- ----- ----- <u>관련 부서장</u> ----- ----- -----.</p>

6.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내용을 근로자 _____는(은) 이해하고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대표자 : 광 양 시 장 (인)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일 지

년 월 일(요일) 날씨 :

감시 활동시간		감시 활동장소	
감시 조원명단			
감 시 활 동 사 항		감 시 활 동 결 과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6. 기타사항			
상기와 같이 확인 합니다.		주민감시요원	(인)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주민감시요원 (인)
			결 재